

● 圖書館 및 讀書振興法

法律 第 4746 號

圖書館 및 讀書振興法

第 1 章 總 則

第 1 條(目的) 이 法은 圖書館 및 文庫의 設立 · 운 영과 讀書振興을 위한 環境造成에 필요한 사항 을 規定하여 圖書館 및 文庫의 건전한 육성과 讀書增進活動을 活性化함으로써 社會 각 분야에 대한 知識 · 情報의 제공 및 流通의 效率화와 文化發展 및 平生教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圖書館”이라 함은 圖書館資料를 蔐集 · 整理 · 分析 · 보존 · 蓄積하여 公衆 또는 特定人の 이용에 提供함으로써 情報利用 · 調查 · 研究 · 學習 · 教養 등 文化發展 및 平生education에 이 바지하는 施設을 말한다.
2. “文庫”라 함은 圖書館의 일반적인 目的과 機能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第 5 條의 規定에 의 한 圖書館의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讀書施設을 말한다.
3. “圖書館資料”라 함은 圖書館(“文庫”를 포함 한다)이 蔉集 · 정리 · 分析 · 보존 · 蓄積하는 圖書 · 記錄 · 小冊子 · 連續刊行物 · 樂譜 · 地圖 · 사진 · 그림 등 각종 印刷資料, 映畫필름 · 슬라이드 · 音盤 · 비디오物 · 마이크로形態物 · 테이프 등 각종 視聽覺資料, 電算化資料, 公文書 등의 行政資料, 鄉土資料 기타 圖

書館 奉仕 및 文庫 活動을 위하여 필요한 資料를 말한다.

4. “公共圖書館”이라 함은 公衆의 情報利用 · 文化活動 및 平生教育을 增進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
5. “大學圖書館”이라 함은 教育法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教育大學 · 師範大學 · 放送通信大學 · 開放大學 · 專門大學 및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教育課程 이 상의 教育機關에서 教授와 學生의 研究 및 教育을 지원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
6. “學校圖書館”이라 함은 高等學校이하의 各級學校(이에 준하는 各種學校를 포함한다)에서 教員과 學生의 教授 · 學習活動을 지원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 또는 圖書室을 말한다.
7. “專門圖書館”이라 함은 그 設立機關 · 團體의 所屬員 또는 公衆에게 特定分野에 관한 전문적인 圖書館奉仕를 提供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
8. “特殊圖書館”이라 함은 障碍人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學習 · 教養 · 調查 · 研究 및 文化活動 등을 위한 圖書館奉仕를 提供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

第 3 條(圖書館 및 文庫의 種類) ① 圖書館은 그 設立者에 따라 國立圖書館 · 公立圖書館 · 私立圖

書館으로 구분하고, 그 設立目的에 따라 國立中央圖書館·公共圖書館·大學圖書館·學校圖書館·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으로 구분한다.

② 文庫는 그 設立者에 따라 公立文庫와 私立文庫로 구분한다.

第4條(大學圖書館등의 이용제공) ① 大學圖書館

· 學校圖書館·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은 그 設立目的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公衆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② 大學圖書館·學校圖書館·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은 당해 圖書館의 特性에 맞는 平生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第5條(圖書館 및 文庫의 施設·資料) ① 圖書館

및 文庫는 圖書館資料(이하 “資料”라 한다)의 보존·整理와 利用者의 편의를 위하여 그 業務에 적합한 施設 및 資料를 갖추어야 한다.

② 圖書館 및 文庫의 종류별 施設·資料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司書職員등) ① 圖書館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圖書館 운영에 필요한 司書職員·司書教師 또는 實技教師(司書)를 두어야 하며, 社會敎育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社會敎育 專門要員을 둘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司書職員은 1級正司書, 2級正司書 및 準司書로 구분하며, 그 資格要件과 養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國家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書職員 등의 研修, 기타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文庫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司書職員 등을 둘 수 있다.

第7條(文化施設과의 協力) 圖書館 및 文庫는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文化院·博物館·美術館 등의 각종 文化施設과 協力하여야 한다.

第8條(資料의 交換·移管·廢棄 및 除籍) ① 圖書館 및 文庫는 資料의 效率적 이용을 위하여

資料를 상호 交換 및 移管할 수 있고 利用價值가 없게 되거나 汚損된 資料를 폐기 또는 除籍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換·移管·폐기 및 除籍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圖書館 및 讀書振興基金) ① 政府는 圖書館

및 文庫의 設立, 施設 및 資料의 확충, 司書職員의 資質向上 및 研究, 기타 圖書館發展과 讀書進興에 필요한 資金에 충당하기 위하여 圖書館 및 讀書振興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할 수 있다.

② 基金은 다음 각號에 따라 文化體育部長官이 관리·운용한다.

1. 圖書館 및 文庫의 設立·운영에 필요한 經費의 보조

2. 讀書振興을 위한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보조

3.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한 讀書振興事業 추진

③ 基金은 다음 각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出捐金

2. 法人·團體 또는 개인의 寄附金

3. 基金의 운영에서 생기는 收益金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益金

第10條(圖書館 및 讀書振興委員會) ① 圖書館의

균형있는 발전과 讀書進興에 관한 다음의 중요 사항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文化體育部에 圖書館 및 讀書振興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圖書館發展 기본정책

2. 圖書館協力網의 구성 및 운영

3. 讀書振興을 위한 綜合計劃의 수립

4. 圖書館과 文庫의 設立·운영 및 施設의 확충

5. 基金의 造成計劃

6. 基金의 관리·運用計劃

7. 基金의 관리·運用上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기타 圖書館政策과 讀書振興에 관하여 文化

體育部長官이 附議하는 사항

- ② 地域社會에서의 圖書館의 균형있는 발전과 讀書振興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에 地方圖書館 및 讀書振興委員會(이하 “地方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③ 第 1 項 및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 · 地方委員會의 구성 ·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11 條(金錢등의 寄附) 法人 · 團體 및 개인은 圖書館 및 文庫의 設立 · 施設 · 資料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基金 · 圖書館 및 文庫에 金錢 기타 財產을 寄附할 수 있다.

第 12 條(私立圖書館 및 私立文庫에 대한 지원)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私立圖書館 및 私立文庫의 設立 · 運營者에 대하여 圖書館資料의 特別購買, 政府刊行物 및 公共刊行物의 우선공급 등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운영이 건전한 私立圖書館과 私立文庫에 대하여 運營經費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第 13 條(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圖書館이 아니면 圖書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한다.

第 14 條(圖書館協會등의 設立) ① 圖書館 또는 文庫는 상호간의 資料交換, 業務協力과 운영 · 管理에 관한 研究, 관련 國際團體와의 相互協力 및 職員의 資質向上과 공동이익의 增進을 위하여 文體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圖書館協會 또는 文庫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 ③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 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④ 國家는豫算의 범위안에서 協會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

第 2 章 國立中央圖書館

第 15 條(國立中央圖書館) ① 文體育部長官 소속하여 國立中央圖書館을 둔다.

- ② 國立中央圖書館은 그 業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分館을 둘 수 있다.

第 16 條(業務) ① 國立中央圖書館은 國家代表圖書館으로서 다음 각號의 業務를 행한다.

1. 國內外資料의 蒐集 · 整理 · 分析 · 保존 · 蕚積 및 公衆에의 이용
2. 國內資料의 制作 관리
3. 다른 圖書館과의 資料의 流通
4. 각종 書誌의 작성 및 標準化와 國際標準資料番號制度의 운영
5. 電算化를 통한 國家文獻情報體制 및 圖書館協力網의 總括
6. 外國圖書館과의 協力 및 資料의 國際交流
7. 다른 圖書館 및 文庫의 業務 · 文化活動 및 平生教育에 대한 指導 · 지원
8. 讀書의 生活化를 위한 施策의 수립 및 실시
9. 圖書館에 관한 調査 · 研究
10. 圖書館 및 文庫의 職員에 대한 研修
11. 기타 國家代表圖書館으로서의 機能수행에 필요한 業務

② 國立中央圖書館은 그 業務를 效率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國會圖書館과 協力하여야 한다.

第 17 條(資料의 제출)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圖書 · 雜誌刊行物 · 音盤 · 비디오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料를 發行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發行 또는 製作日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資料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 외의 者가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發行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發行 또는 製作日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資料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제출하여야 한다. 修訂

- 增補版을 발행하거나 製作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國立中央圖書館은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한 者에게 지체없이 提出畢證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資料에 대한 정당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 ④ 國立中央圖書館長은 資料제출의 實効를 거두기 위하여 關係部處의 長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資料제출의 節次와 補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 18 條(國際標準資料番號)** ① 圖書 또는 連續刊行物을 발행하고자 하는 者는 그 圖書 또는 連續刊行物에 대하여 國立中央圖書館으로부터 國際標準資料番號(이하 “資料番號”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 ② 國立中央圖書館은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등 관련 專門機關 · 단체등과相互協力하여야 한다.
- ③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番號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3 章 公共圖書館

- 第 19 條(設立)** ① 國家, 地方自治團體, 民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설립된 法人(이하 “法人”이라 한다), 團體 또는 개인은 公共圖書館을 設立할 수 있다.

- 第 20 條(業務)** 公共圖書館은 情報 및 文化 · 教育 센터로서의 機能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資料의 蒐集 · 정리 · 보존 · 蓄積 및 公衆에의 이용
2. 公衆에 필요한 情報의 제공
3. 地方行政 및 產業分野에 필요한 情報의 제공
4. 讀書의 生活화를 위한 計劃의 수립 및 실시
5. 講演會 · 鑑賞會 · 展示會 · 讀書會 기타 文化活動 및 平生教育의 主催 또는 嘉勵

6. 다른 圖書館 및 文庫와의 긴밀한 協力과 資料의 交換 또는 相互貸借의 실시
7. 圖書館 業務에 관한 調查 · 研究
8. 기타 公共圖書館으로서의 機能수행에 필요한 業務

- 第 21 條(公共圖書館의 設立 · 육성 등)**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地域社會의 情報提供 및 文化發展과 平生教育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共圖書館을 設立 · 육성하여야 한다.
- ② 公共圖書館은 어린이 · 老人 · 障碍人등에게 圖書館奉仕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 ③ 公共圖書館은 모든 地域住民에 대한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地域의 特性에 따라 分館 · 移動圖書館 또는 貸出文庫를 設立하고 이를 指導 · 육성하여야 한다.

- 第 22 條(公立公共圖書館의 운영)** ① 地方自治團體가 設立 · 운영하는 公共圖書館(이하 “公立公共圖書館”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設立 · 운영하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에서 그 運營費를 부담하여야 하며, 地方教育自治에 관한 法律 第 41 條의 規定에 의하여 教育監이 設立 · 운영하는 公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運營費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② 國家는 公立公共圖書館을 設立한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圖書館의 設立 · 운영 및 그 資料購入에 관하여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第 23 條(公立公共圖書館의 指導 · 지원)** ① 文化體育部長官은 公立公共圖書館의 균형있는 발전과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指導 ·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文化體育部長官은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 ·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公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第24條(國·公立公共圖書館의 館長 및 運營委員會)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立·운영하는 公共圖書館의 館長은 司書職으로 補한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公共圖書館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文化施設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당해 圖書館에 圖書館運營委員會를 둔다.

③ 圖書館運營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5條(法人 등이 設立한 公共圖書館의 登錄 등)

① 法人·團體 또는 개인이 公共圖書館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5條 및 第6條의 规定에 의한 施設·資料 및 司書職員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體育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登錄한 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第5條 및 第6條의 规定에 의한 施設·資料 및 司書職員 등에 관한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때에는 文化體育部長官은 기간을 정하여 是正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③ 文化體育部長官은 第2項의 规定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 등으로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즐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6條(私立公共圖書館의 指導·지원) ① 文化體育部長官은 第25條 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登錄한 公共圖書館(이하 “私立公共圖書館”이라 한다)의 균형있는 발전과 閱覽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指導·지원을 할 수 있다.

② 文化體育部長官은 第1項의 规定에 의한 指

導·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私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第27條(私立公共圖書館의 廢館申告) 私立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당해 圖書館을 廢館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體育部長官에게 廢館申告를 하여야 한다.

第28條(私立公共圖書館의 보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豫算의 범위안에서 私立公共圖書館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第29條(使用料) 公共圖書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利用者로부터 使用料를 빌을 수 있다. 다만, 公立公共圖書館의 使用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30條(資料의 제출) 地方自治團體가 第17條 第1項의 规定에 의한 資料를 발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製作日로부터 30日 이내에 그 資料 2部를 管轄地域 안에 있는 公共圖書館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4章 大學圖書館

第31條(設置) 教育法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 및 다른 法律의 规定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教育課程이상의 教育機關에는 大學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한다.

第32條(業務) 大學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教授와 學生의 研究 및 教育活動에 필요한 資料의 菲集·정리·分析·보존·蓄積 및 그 이용
2. 效率적 教育課程의 수행을 위한 지원
3. 圖書館이용의 體系的 指導
4. 다른 圖書館과의 協力과 圖書館協力網을 통한 資料의 流通
5. 기타 大學圖書館으로서의 機能수행에 필요

한 業務

第33條(指導·監督) 大學圖書館은 教育法과 私立學校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당해 大學 또는 教育機關의 監督廳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第5章 學校圖書館

第34條(設置) 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이에 준하는 각종 學校를 포함한다)에는 學校圖書館 을 設置하여야 한다.

第35條(業務) 學校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學校教育에 필요한 資料의 菲集·정리·分析·보존·蓄積 및 그 이용
2. 讀書指導 및 圖書館이용의 指導
3. 視聽覺資料의 開發·製作 및 이용
4. 기타 學校圖書館으로서의 機能수행에 필요 한 業務

第36條(指導·監督) 學校圖書館은 教育法과 私立學校法의 規定에 의한 당해 學校의 監督廳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第6章 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

第37條(設立 등) ① 國家·地方自治團體·法人·團體 또는 개인은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 을 設立할 수 있다.

② 法人·團體 또는 개인이 公衆이나 障碍人の 이용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資料 및 司書職員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體育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第38條(準用) 第25條 第2項·第3項 및 第26條 내지 第28條의 規定은 第3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에 대하여 각각 이를 準用한다.

第7章 文 庫

第39條(文庫의 設立)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소관 政府投資機關 및 관련 團體 중에서 圖書館이 設立되지 아니한 機關 등에 대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施設基準에 적합한 文庫를 設立할 것을 적극적으로 勸獎하여야 한다.

② 市長·郡守·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邑·面·洞 單位의 地域에 公立文庫를 設立할 수 있다.

③ 市長·郡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事業場·住居團地·建築物 및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公衆利用施設 중 圖書館이 設立되지 아니한 施設에 대하여 私立文庫를 設立할 것을 적극적으로 勸獎하여야 한다.

④ 私立文庫를 設立·운영하고자 하는 者는 文化體育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40條(文庫의 운영) ① 文庫의 設立者는 讀書 資料의 확충과 讀書指導의 實시등 讀書振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文庫는 해당 地域에 所在한 公立公共圖書館의 分館으로서 公立公共圖書館의 指導·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③ 私立文庫는 該當 地域에 所在한 公共圖書館의 指導·支援을 받아 運營한다.

第8章 圖書館協力網

第41條(圖書館協力網의 구성) ① 文化體育部長官은 資料의 流通·管理 및 이용등에 관한 圖書館業務의 效率성을 높이고 각종 圖書館의 相互協力を 도모하기 위한 連繫體制로서 다음 各號의 機能을 수행하는 圖書館協力網(이하 “協力網”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1. 電算化된 情報體系를 통한 情報 및 資料의 流通
2. 書誌編纂 · 情報處理 · 奉仕活動 및 施設等의 標準화
3. 分擔收書 · 相互貸借 · 綜合目錄 · 印刷카드制度등 圖書館운영의 效率화
4. 기타 다른 圖書館과의 相互協力에 관한 사항

② 協力網은 각종 圖書館으로 구성하고 協力網의 效率적 운영과 統轄을 위하여 中央館과 地域代表館을 두되, 中央館은 國立中央圖書館이 된다.

第42條(中央館의 業務) 協力網의 中央館은 다음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地域代表館의 지정 또는 變更
2. 協力網의 機能수행에 관한 企劃 · 調整 · 指導
3. 協力網운영의 統轄

第43條(地域代表館) ① 地域代表館은 서울特別市 · 直轄市 및 道에 두되, 中央館이 이를 지정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代表館은 中央館의 指導 및 調整을 받아 傘下地域의 協力網運營을 統轄하고 그 效率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市 · 郡 및 區(自治區에 한한다)에 地方代表館을 둘 수 있다.

第44條(協力等) 協力網機能의 效率적 遂行을 위하여 圖書館의 設立者는 당해 圖書館에 필요한 施設 · 체계 등을 갖추어야 하며 圖書館은 中央館 및 地域代表館의 指導에 따라 다른 圖書館 및 각종 文化施設과 相互協力하여야 한다.

第45條(協力網의 운영) 協力網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章 讀書振興

第46條(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任務)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과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讀書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各號의 方법으로 讀書振興을 위한 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1. 讀書振興을 위한 綜合計劃의 수립
 2. 圖書館 · 文庫等 讀書振興을 위한 施設 · 設備의 확충
 3. 讀書資料等의 확보를 위한 產業體 및 地域住民과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讀書活性화 등의 業務推進
 4. 기타 讀書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讀書振興을 위한 施策과 計劃의 施行에 관하여 文化體育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機關 · 團體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第47條(讀書教育 등)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과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國民에게 讀書教育의 機會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教育部長官은 教育法의 規定에 의한 大學 · 師範大學 · 教育大學 · 專門大學 · 各種學校를 제외한 각 學校에서 讀書education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教育課程의 編成과 讀書關聯 教科用圖書의 編纂 · 発행 등의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48條(讀書의 달 行事 등) ① 國家는 國民들의 讀書意慾을 鼓吹하고 讀書의 生活化 등 讀書振興活動에 대한 國民들의 적극적인 參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讀書의 달”을 設定하여야 한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讀書振興에 功績이 있는 者와 讀書實績이 우수한 者 등에게 褒賞 또는 表彰을 수여하거나 奨學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③ “讀書의 달”的 設定과 讀書關聯行事, 褒賞 및 表彰, 奖學金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9條(學校等의 讀書振興活動)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學校 및 職場에 소속된 學生 또는 職員등의 讀書活動을 活性化하기 위하여 學校 · 職

場에 讀書모임을 두도록 奨勵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할 수 있다.

第 10 章 補 則

第50條(權限의 위임 · 委託) 이 法에 의한 文化體育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長 · 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協會 및 關聯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第51條(關聯部處와의 협조)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體育部長官은 讀書振興을 위한 教育 · 行事 등에 관한 중요한 決定이나 施行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52條(年次報告) 政府는 매년 讀書振興에 관한 施策 및 그 施行結果에 관한 年次報告書를 定期 國會 開會전까지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53條(過怠料) ① 第 25 條 第 1 項 또는 第 37 條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圖書館을 개설한 자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 第 13 條의 規定을 위반한 자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③ 第 17 條 第 2 項의 規定을 위반한 자는 당해 資料定價(그 資料가 非賣資料인 경우에는 당해 刊行資料의 原價)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第54條(過怠料의 賦課 · 徵收節次) ① 第 53 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體育部長官이 賦課 · 徵收한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文化體育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③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

가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을 제기한 때에는 文化體育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④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공포 후 4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廢止) 圖書館振興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圖書館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圖書館振興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私立公共圖書館 · 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은 이 法에 의하여 登錄된 것으로 본다.

第4條(國 · 公立公共圖書館의 館長에 관한 經過措置)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立 · 운영하는 公共圖書館의 館長은 第 24 條 第 1 項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까지는 司書職 또는 行政職으로 補한다.

第5條(圖書館協會등에 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圖書館振興法 第 14 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圖書館協會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것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당시 이미 設立된 社團法人 “새마을文庫中央會”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協會로 본다. 다만 “새마을文庫中央會”에 대한 指導 · 監督은 文化體育部長官과 協議하여 內務部長官이 한다.

第6條(行政處分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體育部長官등의 行政機關이 행한 登錄 기타 行政機關의 行위 또는 각종 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行위는 그

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 著作權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中 “圖書館振興法”은 “圖書館 및 讀書振興法”으로 한다.

② 基金管理基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중 39.의 “圖書館進興法”을 “圖書館 및 讀書振興法”으로 한다.

③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圖書館振興法을 인용한 경우에는 圖書館 및 讀書振興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본지에 게재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문화체육공보 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친후 제166회 임시국회 본회의(1994년 3월 3일)에서 통과되어, 법률 4746호(1994년 3월 24일)로 공포되었으며 199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법안의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제정일지를 게재한 이유는 동법이 제정된 배경 및 경위를 모든 도서관인께 알리고자 함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